

2024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보안설비구축) 지원사업 공고

2024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보안설비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중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목)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 지원내용 : 기술적·물리적 보안설비(솔루션·장비) 구축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예상기업 포함)
 -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예상기업) 자격은 협회에서 판단
- 사업예산 : 총 150,000천원
- 지원규모 : 총 구축비(부가세 제외)의 50% ~ 80%(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 * (중소기업) 총 구축비의 80%, (중견기업) 총 구축비의 50%까지 지원
 - ** 기업별 지원예산은 원가조사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 지원 가능

< 지원분야 예시 >

- ①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접근통제, 보안USB, DLP, DRM, MDM 등)
- ② 네트워크보안 시스템(가상사설망, 방화벽, 통합보안시스템, 망분리 등)
- ③ 시스템보안 솔루션(APT 대응, 멀웨어 대응, 스팸차단 등)
- ④ 보안관리 시스템(디지털 포렌식, 백업/복구관리, 보안관제 등)
- ⑤ 생체인식 보안시스템(음성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 ⑥ 물리보안 솔루션(영상감시관제 S/W, 지능형 영상감시 솔루션 등)
- ⑦ 물리보안 장비(CCTV, 출입통제장비, 보안용 저장장치 등)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28(목) ~ 4.16(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첨부서류 3종 포함), 증빙서류(해당 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송부(socool@kaits.or.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협력팀 김경선 팀장
(02-3489-7044, socool@kaits.or.kr)

3

추진 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4.3.28.~4.16.
↓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4.16.
↓		
예비수요기업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예비수요기업	~4.23.
↓		
구축계획서 접수·평가	예비수요기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5.10.
↓		
수요기업(확정)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수요기업	~5.17.
↓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수요/공급기업	~5.24.
↓		
보안설비 구축(최종보고서 제출)	수요기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6월~8월
↓		
중간점검(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7월
↓		
최종점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외부전문가)	9월
↓		
정부지원금 요청	수요기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0월
↓		
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공급기업	10월
↓		
성과평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수요기업	11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및 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비수요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별도 안내

* 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가→다→나), ② 기술유출 피해기업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점)
가. 국가핵심기술 관리 현황 (50)	• 신청기업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수	10
	• 국가핵심기술 수출, M&A 등 신고·승인 신청 수 * '21년 ~ '24년 3월말 기준	20
	•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역량평가 결과 * '23년 기준	20
나. 기술보호활동 참여 현황 (20)	• 협회 주관 보안교육 참여 현황 * '21년 ~ '24년 3월말 기준 ** 증빙자료(협회 발급 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 해야 인정 가능	10
	• 협회 주관 기술보호 보안닥터 지원사업 참여 현황 * '21년 ~ '24년 3월말 기준	10
다. 보안설비구축 기대효과 (30)	• 보안설비 구축에 따른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기대효과	30
우대가점	• 기술유출 피해 기업 * 증빙자료(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사본)를 제출해야 가점인정 가능 ** '21년 ~ '24년 3월말 기준	5
합 계		100

- 본 사업은 예비수요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예비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구축계획서를 접수·평가하여 최종 수요기업을 선정함
 - * 예비수요기업 및 최종 수요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신청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2~'23 기준)이 있는 신청기업의 경우 후 순위로 선정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보안 설비와 같은 제품은 신청할 수 없음
- 수요기업은 자체 규정에 따라 보안설비(보안솔루션·장비)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사업 진행 시 문제가 없도록 공급기업을 관리해야함
- 수요기업은 협약서 3부에 직인날인 후(공급기업 직인날인 포함) 협회에 제출해야함(협회 직인날인 후 2부는 다시 수요기업에 발송)
- 수요기업은 보안설비 구축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하여 구축결과 점검을 실시함
 - * 현장점검 결과, 실제 구축 결과가 구축계획서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현장점검 결과 문제가 없고, 수요기업이 기업부담금을 공급기업에 지급 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기업에 일괄 지급함
 - * 보완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수요기업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정부지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문제는 수요기업의 책임임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중소벤처기업부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수혜기업 제외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협회가 요청하는 중간점검(서면 또는 방문)에 협조해야함
- 수요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홍보를 위한 협회 요청에 협조해야함(설문조사 또는 담당자 인터뷰 등 진행 가능)
- 본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수요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에 지원 불가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이며,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철회함
- 본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1. 보안설비구축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3.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부. 끝.